

【 1 】 제16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제의년월일 : 1993. 3. 26

제 의 자 : 의 장

제안이유

제16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 회 기 : 1993. 3. 29 - 3. 39 (1일간)

【 2 】 양주군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3. 8.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경기도공인조례( '92. 12. 7 조례제2326호 )가 개정되어 공인의 구분과 일부 내용이 신설 및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공인 구분에 관한 규정 신설 (제2조제1항)

    가. 기관장 명의로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

2.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장 전용임표시 규정 통일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가. 모든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조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합의제기관 공인의 규격 (3.6cm정사각형) 을 정함

3. 공인의 관리에 관한 각종 서식 변경

    가. 공인신조 및 개각에 따른 서식외 5종 (제6조내지 제8조, 제10조내지 제12조)